우버人사이트

매경미디어그룹 바로가기 >

MK 우버人 필진 접수 mkuberin@gmail.com

Home

캠퍼스에서

KOTRA・韓商의 눈

Tech&

Life&Culture

Society&Business

EARN A BONUS UP TO \$40,000.

SEE IF YOU QUALIFY >>



이명원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이명원 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한국에 거주하는 미 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 한국의 근로소득이 어느정도면 미국에 세금을 안내나?: \$102,1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나?



이명원 | MW LEE, CPA P.C. 대표

입력: 2018.01.12 15:12:14 수정: 2018.01.12 19:58:29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미국에 세금을 안 내려면 한국의 근로소득을 어느정도로 맞추면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된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 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개인소득세 계산체계를 한번 살펴보자.

- ① Gross Income : 총소득
- ② deductions for AGI: 상위공제
- = ③ Adjusted Gross Income : 조정후소득금액
- ④ Itemized deductions (or Standard deduction) : 항목별공제/표준공제
- ⑤ Exemptions : 인적공제
- = ⑥ Taxable Income : 과세표준
- X ⑦ Tax rate : 세율
- = ® Tax : 세금
- ⑨ Tax Credit : 세액공제
- = 10 Tax Due(or Refund): 납부할 세금(환급세금)

추천 기사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변하고 있는 세상, 워킹맘들의 미래는 밝다



자신만의 이미지, '얼굴이 참 좋 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뇌를 건강하게 하는 시작, 학습 자세 바로 잡으면 집중력이 쑥



자신의 열정과 역량을 드러내 려면 활동의 다양성보다는 내 용이 중요하다



내 자신을 돌아볼 공간, 누구에 게나 공터가 필요하다

위 표를 보면, '⑧세금'은 '⑥과세표준'에 '⑦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⑥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만 세금이 계산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과세표준 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6/24/2018 우버人사이트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는 한국의 EARNED INCOME중 최대 \$102,100을 EARNED INCOME에서 차감 해 준다는 것으로, \$102,100을 위 '①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⑥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게 된다.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그럼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102,100을 넘으면 반드시 미국에 낼 세금이 있다는 말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세법에는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규정이 있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정액을 EARNED INCOME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이 위 '①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공제가 가능한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에는 주택임차료(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공정한 임차료 상당액), 수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전화료 제외), 가구 등의 렌트비, 보험료, 주차요금 등과 같은 비용이 있다. 그런데 해외주거비공제는 해외주거비중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인 연 \$16,336(1일 기준 \$44.76)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해외주거비로 2017년도 중 \$25,000을 지출한 사람은 \$8,664(=\$25,000 - \$16,336)를 해외주거비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15,000을 지출한 사람은 지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IRS입장에서는 해외주거비를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 주거비 한도액을 두고 있는데, 2017년도 한도액은 \$30,630(1일 기준 \$83.92)이다. 따라서 2017년도에 해외주거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연\$14,294(1일 기준 \$39.16)이 된다. 이는 해외주거비 한도인 연 \$30,630(일 \$83.92)에서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인 연 \$16,336(일 \$44.76)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런데 서울, 도쿄, 런던 등과 같이 다른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IRS에서 정한 한도액인 \$30,630(1일 기준 \$83.92)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IRS는 서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주고 있다. 참고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2017년도 해외주거비한도액은 연 \$54,900(1일 기준 \$150.41)이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2017년에는 최고 \$38,564(= \$54,900 - \$16,336)를 해외주거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타 도시별 해외주거비 한도액은 Form 2555 설명서를 참조하면 되겠다.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



BETTER BLOOD PRESSURE
GET REAL SUPPORT

(i) X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 손흥민 골에 오소리오 감독 "훌륭해...현재와.. 클라라 파격적 후 화보...아찔함 업그레이드 JP 별세에 다시 관심...전두환·노태우 근황은 오승아 란제리 화보...레인보우 몸매 퀸 "양도세 엎친 데 종부세 덮쳐"...더 얼어붙는 ..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후개입·더딘 北비핵.. 신세계百 '워라밸'...개점 11시로 늦춘다 캄보디아서 중국인 상대 '아기공장' 적발...대..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언덕(?) 6/24/2018 우버人사이트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건을 갖춘 한국거주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중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해외주거비공제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은 위 '①총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제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EARNED INCOME중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금액과 해외주거비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과 모든 Unearned Income(이자•배당•임대수입•양도소득 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시 위 표를 보자. 표를 보면, '⑥과세표준'은 '① 총소득'에서 다시 각 납세자별로 '⑤인적공제(exemption)'와 '④항목별공제/ 표준공제(itemized deduction/ standard deduction)'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즉, 과세대상소득 중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금액도 미국에 세금을 안낸다는 의미이다.

인적공제(exemption)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4,050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한국의 인적공제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해 하면 된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2018년 부터 인적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표준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방법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는 2013년 개정전 한국의 소득세법상의 항목별공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의료비(medical expenses), 주정부세금(taxes)등 ,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의료비, 모기지이자 등의 항목별공제액이 법에서 정한 일정액(세금신고유형 (filing status), 연로자 여부 및 시각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보다 적은 경우, 항목별공제 대신 법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표준공제라 한다.

Foreign Tax Credit

이렇게 해외주거비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그리고 인적공제나 항목별 공제/표준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102,100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사 해외주거비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인적공제나 항목별공제/표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도 남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어, 그에 대해 미국의 세금이 계산됐다하여 반드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위 표를 보자. 우리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 즉, '⑩납부할 세금(환급세금)'은 과세표 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⑧세금'에서 '⑨각종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됨을 알 수 있다. 즉, 계산된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기타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6/24/2018 우버人사이트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미국의 세금이 계산되더라 도, 그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미국의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에 낼 세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해야겠지만, EARNED INCOME규모를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등의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은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고로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및 Foreign tax credit 규정은 주정부세금(state tax) 계산시 적용안되는 주(state)가 있으니 그 주(state)의 거주자는 주정부세금을 낼 수도 있으며, 또한 investment income(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MW LEE, CPA P.C. 대표 회계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원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더보기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해외근로소득공제: \$102,100까지는 세금 안 낸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		
		도움말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6/24/2018 우버人사이트

매일경제

매일경제 회사소개 | 회사연혁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인재채용 매경닷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의견 | 서비스문의

매경 Family Site 대경 Family site 이메일 추출금지 | 윈도우XP SP2설정 | 뉴스이용규칙 RSS

Copyright (c) 2013 매경닷컴. All rights reserved.